

HIV/AIDS 환자의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정부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치료와 복지를 위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모든 감염인/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질환인 에이즈에 감염되면 많은 이들은 그 충격에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의지를 꺾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그 감염인이 한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가정경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 혹은 개인의 생계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감염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감염인들 중 생활유지가 곤란한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면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정부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급여의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를 달리한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이 해당되고 진료비 전액(입원시 식대 20% 본인부담)이 지원되며 수급자 중 1종이 아닌 자는 모두 2종으로 지정하여 진료비의 80%가 지원된다. 다만 진료 부상 등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초음파 등 일부진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에서 제외된다.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먼저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회담당을 찾아 상담을 받고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사회담당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하고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대상으로 판단하면 구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요청을 하고 구청이나 군청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매년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재심사를 하고 있다.

